

■ 독일·프랑스·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3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관세율(%)
독일	1. 비놀릿(Westlake Vinnolit GmbH & Co. KG)과 그 관계사	31.55
	2. 그 밖의 공급자	30.60
프랑스	3. 켄 원(KEM ONE)과 그 관계사	31.55
	4. 그 밖의 공급자	
노르웨이	5. 이노빈 유럽(Inovyn Europe Limited)과 그 관계사	25.79
	6. 그 밖의 공급자	
스웨덴	7. 이노빈 무역(Inovyn Trade Services SA)과 그 관계사	28.15
	8. 그 밖의 공급자	

비고: 제2호의 공급자가 제1호의 공급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